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536 발의연월일: 2023. 7. 28.

발 의 자:김승원・유기홍・강민정

한병도 · 신정훈 · 권칠승

박완주 · 김영배 · 조정식

허 영·박범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 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난피해자등(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)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 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.

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조회를 조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함.

이에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

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(死者의 경우 유족들)에게 통지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함(안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3제6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의3제6항부터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7항에"를 "제8항에"로, "제8항에"를 "제9항에"로, "제4항에"를 "제4항 및 제6항에"로 한다.

- ⑥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재난피해자등(해당 재난피해자등이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.
- 1. 재난 대응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
- 2. 제1호의 정보의 이용내역
- 3. 제1호의 정보가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

제80조제3호 중 "제74조의3제7항에"를 "제74조의3제8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집된 정보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|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|
|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|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|
| 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| 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|
| ~ ⑤ (생 략) |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⑥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|
| |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 |
| | 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 경우 |
| | 재난피해자등(해당 재난피해자 |
| |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|
| | 을 말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|
| |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|
| | 한다. |
| | 1. 재난 대응을 위하여 수집된 |
| |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|
| | 2. 제1호의 정보의 이용내역 |
| | 3. 제1호의 정보가 업무종료 후 |
| |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 |
| | 실과 파기된 시점 |
| <u>⑥</u> ~ <u>⑧</u> (생 략) | ⑦ ∼ ⑨ (현행 제6항부터 제8 |
| | 항까지와 같음) |
|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| 10 |
|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| <u>제8항에</u> |
|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| |

및 절차, 제3항 및 <u>제8항에</u>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·범위 및 <u>제4항에</u>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제74조의3</u> <u>제7항에</u>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 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
| | | <u>제9항에</u>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<u>제4항 및</u> |
| | <u> 제6항에</u> | |
| | | |
| | | |
| 제 | 80조(벌칙) | |
| | | |
| | | |
| | 1. ~ 2. (현행과 | 같음) |
| | 3 | 제74조의3제 |
| | <u> 8항·에</u> | |
| | | |
| | | |